

의안번호	제 374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9월 일 (제 314 회)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광진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8월 29일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광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8월 29일
발의자 : 이광진, 강현삼, 김종필,
김영주, 김재종, 박문희,
임헌경

1. 개정이유

-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·시행('11.07.08) 중 관계 법령의 조항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

2. 주요내용
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 변경 (안 제6조)
 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일치
- 담당부서 변경 (안 제15조제4항)
 - 담당부서가 균형개발과에서 도로과로 변경되는 등 조직개편에 따라 “담당부서 과장”으로 변경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 추 계 서 : 해당사항없음

7. 관련부서 협의 : 균형건설국 도로과와 협의

8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(12. 8. 9. ~ 8. 28.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간사는 균형개발과장이 된다.”를 “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.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25인 이내의”를 “25명 이내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하도급의 적정성 심사) 도지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·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2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5조(회의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균형개발과장</u>이 된다.</p>	<p>제6조(하도급의 적정성 심사) ----- -----<u>같은</u> -----<u>법 시행령 제34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구성) ① ----- -----<u>25명 이내의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, ----- <u>담당부서 과장</u>----- -----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

제27조의2 (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)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"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"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(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·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삭제<2011.11.3>
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제34조(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)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"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[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(직접·간접 노무비,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)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,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,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]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.